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I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763호
2. 발 의 자 : 박강산 의원
3. 발의일자 : 2023. 5. 30.
4. 회부일자 : 2023. 6. 5.

II. 제안이유

-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,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.

III. 주요내용

-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).

IV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」

2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3. 기 타

○ 입법예고(2023. 6. 8. ~ 6. 12.) 결과 : 의견 없음.

V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박강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763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현행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’ 고 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 ‘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’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¹⁾
-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12월 ‘예술활동 지역협력시스템 선진화’ 를 3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정하고 지역과 연계된 예술교육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 체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「2021~2025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」 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.
-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「202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본계획」 을 수립하여 서울시와 함께하는 예술공연 체험, 국립국악원 연계 찾아가는 교실 음악회 및 매일유업 연계 교원 초청 음악회,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

1)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

제15조(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(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·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·전시·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운영 지원 등 지역 연계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- 안 제14조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,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협력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을 수용하나 상위 법령 및 동 조례와 중복 부분이 있어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8833, 2023. 6. 8.).
- 그러나 상위법의 경우 그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면서 주로 교육시설이나 교육단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·전시 등의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동 개정조례안은 그 추진 주체에 있어서 상위법의 지방자치단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하면서 지방자치단체,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

이와 같은 규정이 상위법과 반드시 중복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향후 보다 효과적인 협력 사업 추진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.
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예술교육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8개 교육청의 조례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[표-1] 동 조례 중 지역 연계에 관한 규정

제3조(기본원칙)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.
3. <u>기초 예술교육 함양을 위한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 도모</u>
제10조(업무) 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3. <u>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위한 연계망 구축</u>
제11조(진흥 사업)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6. <u>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</u>

[표-2] 타 시도교육청 예술교육 관련 조례 중 협력체계 구축 조항 현황

연번	조례명	협력체계 구축 조항
1	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	제18조(협력체계 구축)
2	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	-
3	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에 관한 조례	-
4	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	제16조(협력체계 구축)
5	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	-
6	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	제9조(협력체계 구축)
7	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	-
8	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	제9조(협력체계 구축)
9	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	제12조(협력체계 구축)
10	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	제17조(협력체계 구축)
11	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	제15조(협력체계 구축)
12	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	제12조(협력체계 구축)
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의안심사지원팀장	이준석 2180-8263	입법조사관	김한수 2180-8269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